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길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8
----------	----

발의년월일 : 2014년 12월 17일
발 의 자 : 홍길식 의원
찬 성 자 : 김순길·윤선경·이기수
서호성·김혜미·황춘하
장숙이·이경선·박경희
의원(9인)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 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안 제5조)
- 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5조
- 나. 예산조치 : 정책기획담당관 및 사회복지과와 협의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14. 12. 18 ~ 2015. 1. 7
 - 2) 관련부서 의견제출 : 정책기획담당관(별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대문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서

작성부서

정책기획담당관(예산팀)

조례 제정안의 예산 관련 사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예산의 지원)

검토의견

- 2014년도 서대문구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자체수입 감소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13년 39.2%에서 '14년 28.4%, '15년 25.7%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며, 기초연금 및 복지비가 '14년 대비 18.1%가 늘어나 세출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상위 법령에 따라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